

한국형 비실시기업과 비즈니스 모델

제5장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현황

슬프게도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키워드는 ‘制限’과 ‘不在’로 인한 ‘後進性’으로 요약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은 IP 시장을 국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국내에는 IP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슬픈 현실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는 ‘후진성’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 채 이미 10년 전 시작된 지식기반시대를 표류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진단이 사실일까?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중류·하류 및 IP 인프라 현황을 곱씹어 살펴보면 ‘표류’라는 단어가 오히려 미사여구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지식기반 생태계는 낙후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 또한 엿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1.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의 문제점

우선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에서는 ‘발명가’에 의한 IP의 역동적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발명가 대부분은 IP를 창출하여 얻은 수익이라는 과실을 맛본 적이 드물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IP를 창출할 의욕을 이미 잃었거나 곧 잊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발명가가 IP를 창출하여 돈 좀 벌라치면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교육자는 돈 밝히시지 말고 교육에나 전념하시라”는 질책을 받는다. 국책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발명가가 IP를 창출하여 돈 좀 벌까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는 처지에 돈까지 밝히는 욕심 많은 연구원”이라고 매도당하기 쉽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발명가가 돈 좀 벌어볼까 하고 IP를 창출하면 이는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대기업에 자동 양도되고, 대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더라도 (대부분 대기업은) 이를 직원과 공유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IP를 창출하여 대박을 낼라치면 이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대기업이 이를 가로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설령 대학의 교수·발명가, 연구소의 연구원·발명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들이 자신의 IP를 허락없이 사용한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이라도 벌릴라치면 그들은 영락없이 우리나라 수출역군인 대기업의 발목이나 잡으려는 매국노로 매도되기 일쑤이다.

특허관련 경영진 까지 내세운 'xx' 특허경영이 시작부터 망신살을 빚치고 있다. 최근 'xx'가 'yy' 와의 특허분쟁에 패한 것은 물론, 'xx'의 '000' 관련 특허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 나윗과 글씨의 써움에서 나눴던 이겼다. 000여명이 넘는 'xx'가 위크아웃 상내인 00여명의 'yy'에게 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0월 00일 'yy'가 'xx'를 상대로 낸 00여 등록부호 소송에서 'xx'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바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xx'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쓰는 기업들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여 특허사용료를 수익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면 영속도 제거되고 있다. 대기업은 시너지 효과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특허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특허경영에 나서겠지만, 'yy'와 같은 작은 기업에 그토록의 써움이 절절 더 넓리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식이다. 실제로 000여 이끄는 'xx'는 디자인 및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기업 및 제품들을 적발하고 판매를 중단시키는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 1. 국내기업 'xx' 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다른 국내기업 'yy'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소송을 '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청구'가 아니라 '의혹'으로 치부하는 금년도 상반기 신문기사

이 정도는 약과다. 우리나라 기업들끼리도 자신의 IP를 허락없이 사용한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이라도 벌릴라치면 제품 생산에는 관심 없고 법률 소송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불량한 기업'으로, '의혹'의 대상으로 치부된다. (위 기사 1 참고) 따라서 한 기업이 자신의 IP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다른 기업에 대하여 특허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아래 기사 2 참고) 이러한 풍토에서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들이 자신들의 IP를 허락 없이 사용한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벌일 수 있을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창출한 IP를 이 정도로 무시하고 경원시하는 척박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발명가 대부분은 IP 창출 의욕을 이미 잃었거나 곧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00일 특허 업계에 따르면 'xx'는 지난 0월 세계적 특허파일로 알려진 'uu' 관련 회사인 'yy'로부터 ... 소송을 당했다. 'yy'가 미국 00 등에 낸 소장엔 'xx' 외에 파나소닉, 필립스, 파이오니어, 리서시안모션, 소니, 시게이트 등이 함께 세소된 것으로 대 있다. 문제는 이 00 기준 특허가 당초 'zz' 소유였다는 내서 출발한다. 'zz'는 00년 이 특허를 등록한 뒤 특허를 계속 유지하기 보단 특허를 팔아 수익을 생기는 게 더 낫다고 보고, 00+1년 이를 국내 특허 거래 회사인 'ww'에 넘겼다. 'ww'는 00+2년 이를 'uu'에 매각했고, 'uu' 관련 회사인 'yy'가 이번에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zz'는 "특허를 사거나 팔는 것은 업계에선 일상적인 일로서, 특히 특허를 보유하여 발생하는 효익보다 유지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보다 큰 경우 회사로선 배격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00 기술 특허의 경우, 00+2년 특허 거래 관련 국내업체에 매각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의 일은 'zz'로선 '관여할 수 없는 일이며, 관여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 2. 국내기업 'zz'의 특허를 구매한 외국기업 'yy'에게 국내기업 'xx' 가 소송당한 데 대하여 특허소송을 '정당한 재산권에 근거한 권리 청구'가 아니라 '수익'을 쟁기려는, 일종의 '불량행위'로 오도하는 금년도 중순 신문기사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법에 의존하는 것을 비하하는 풍토에서도 우리나라 발명가들이 IP 창출 의욕을 지니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 발명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 · 발명가, 대기업의 직원 · 발명가는 왜 우리나라가 세계 제4위의 '특허강국' 자

리를 꿰찰 정도로 그리도 열심히 IP를 창출하는 것 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수 · 연구원 · 직원의 인사고과에 특허 출원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발명가들은 자신의 스승, 선 · 후배, 일가친척 발명가들이 IP를 창출하고 그로부터 맷은 달콤한 과실을 맛본 경우를 목도한 적이 거의 없다. 그 결과 대부분의 우리나라 발명가들은 인사고과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내키지는 않으나 피할 수는 없는 의무방어전을 치르는 자세로 IP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욕을 잃은 발명가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 내실 없이 창출한 IP를 꿰어 보배로 만들어 보겠다는 발상은 애당초 꿈이며, 이상이며, 현실이 아니다.

2.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종류의 문제점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종류 역시 IP법률 '전문가'에 의한 IP의 능동적 '권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IP법률 전문가 대부분은 전국 아래 횡횡해온 덤펑 관행 때문에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과실을 맛본 적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IP 권리화에 열정적으로 몰두할 이유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수십 년간 이어진 덤펑 관행에 대한 책임은 물론 이를 깨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휘둘려온 국내 IP법률 전문가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발명가들에게 있다. 즉 IP 창출로 인한 수익을 즐긴 적이 없는 우리 발명가들은 의무방어전을 치르는 기분으로 발명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IP 권리화라는 작업은 IP를 생태계 상류로부터 종류로 전달하며 그 가치를 배가하는 작업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치러야하는 불필요한 의식에 불과하다. 어차피 수익 창출로는 연결되지 않는 특허 발명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변리사에게 출원을 의뢰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발명가들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변리

사를 선호하는 한 우리의 덤픽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하지만 덤픽 관행의 근본적 책임을 발명가들만이 져야할 필요는 없다. 대학·연구소·기업에서(대부분의 대기업 제외) 발명을 관리하는 많은 IP 관리부서(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직원들도 이에 끊지않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관리직 출신이 대부분인 TLO 직원들은 우량 발명과 불량 발명을 구별할 수 있는 선구안이 없으므로 접수한 모든 발명을 출원하는 안이한 관행을 선호한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수효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려니 역시 더 값싼 변리사 사무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연구소에서 어쩌다 알찬 발명이 창출되더라도 값싼 변리사 사무소에서 제대로 권리화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 특허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보다 더 처절한 현실은 국내에 편중되는 우리나라 TLO의 특허 출원 관행이다. 즉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수효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려니 자연적으로 건당 비용이 높은 해외 특허 출원은 기피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건당 비용이 낮은 국내 출원에만 집중하는 관행이다. 하지만 특허법은 속지법이기 때문에 국내 특허로만 보호받는 우리 IP는 해외에서는 누구나 아무런 구속 없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IP로 전락한다. 국내에서는 돈을 주고 써야하나 해외에서는 누구나 공짜로 퍼갈 수 있으니, 이러한 관행은 (그래도 범법자는 돈을 베는) '기술유출' 보다도 못한 (아무도 돈 벌지 못하는) '기술기부' 라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하류의 문제점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와 중류가 혼탁하니 하류라고 맑을 리가 없다. 즉 열정 없이 창출되고 부실하게 권리화된 IP를(집으면 부스러지는, 허약한 불량 구슬) 활용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가정에 기초한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쩌다 창출된 양질의 IP도 국내에만 특허 출원되어 해외에서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집었을 때 부서지지는 않지만 가운데 구멍이 없는 구슬)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국내에만 출원된 IP를 구입하는 기업은 국내 시장

에서만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나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만 출원된 IP를 구입하는 대기업이 있다면 이 또한 회장님께서 격노할, 문제의 기업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IP의 유동성 부족이다. 발명의 부실 유무, 권리화의 부실 유무를 떠나 우리나라 IP 사업가들은 활용할 IP 부족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바, 이는 상류에서 창출되고 중류에서 권리화된 IP가 하류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유동성 부족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대학·연구소 TLO이다. TLO의 주된 임무는 대학·연구소에서 창출된 IP를 선별적·전략적으로 권리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TLO는 '비즈니스' 보다는 '관리' 위주의 행정을 담당하던 정부 부처 주도로 단기간에 졸속 설립될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TLO는 선택과 집중 없이 접수한 IP를 모두 특허 출원하는 비효율적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TLO는 비즈니스 마인드 결여로 인하여 대학·연구소에서 창출된 IP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전향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관리만 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IP의 유동성 결여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 IP 사업가들의 역량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는 상류·중류·인프라의 심각한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상류·중류·인프라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IP 사업가들은 세계를 무대로 이를 전향적으로 활용할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이는 아무도 던져보지 않은 질문이다. 아직까지 준비 기간이 넉넉한 우리나라 IP 사업가들로서는 시험장에 끌려가 문제를 풀기 전에 충분히 자신의 역량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사료된다.

4.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인프라 문제점의 심각성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상류·중류·하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바로 IP 인프라이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각 단계의 문제점 중 많은 부분이 IP에 비우호적인 우리의 IP 인프라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P의 성격 및 활용에 대한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구성원의 인식이나 IP 관련 제도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도 할 수 있다.

1) 국수주의에 근거한 IP 공유주의

우선 IP에 대한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의 인식은 공유주의에 가까운 편향성을 보인다. 어쩌면 산업자본시대에 IP 창출은 등한시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역점을 둔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해마다 증가하였지만 이에 비례하여 외국 기업에게 우리 수출기업이 당하는 특허침해소송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IP 공유주의는 어쩌면 이러한 피해의식에 근거한 국민적 반감일 수도 있다. 즉 지금껏 IP는 선진국이나 보유하는 것이니 특허소송 얘기만 나오면 항상 우리의 가슴은 조마조마했다. 그러다보니 우리도 모르게 특허소송은 선진국이 우리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는 피해망상을 가지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범국가적으로 공감하는 IP 공유주의의 기초일수도 있다.

해외 IP에 대한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의 피해망상은 우리 생태계 상류에서 우리의 발명가들이 창출한 IP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즉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은 해외 기업들이 특허침해로 우리 수출기업을 제소하는 것을 경원시하는 만큼 우리 발명가들이 창출한 IP로 우리 수출기업을 제소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경원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교수·발명

가,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발명가,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발명가는 자신이 창출한 IP를 우리 수출기업이 침해하더라도 이를 관대히 용인하도록 강요받는다. 설령 이들이 자신들의 IP를 침해한 수출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이라도 벌릴라치면 그들은 영락없이 ‘교육자로서의 도의를 쳐버린 교수’로 손가락질 받거나 ‘남도 아닌 우리끼리 치사하게 소송을 주고받는’ 탐욕스러운 연구원으로 비난받는 동시에 우리나라 수출역군의 발목을 잡는 매국노로 매도될 것이다. 즉 지난 세기의 피해망상 때문에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은 심지어 우리의 발명가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IP를 발명가들의 동의 없이 도용하는 수출기업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특허준 ETRI 특허침해 제소 ... ETRI가 일본, 대만, 유럽의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폭염을 식혀주는 빙고다. 특허소송 얘기만 나오면 한국기업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해왔던가. 특히 소송에 관한 한 한국은 지금까지 수세 월변도였다 ... 그 풋인 우리 기업들은 남의 것을 가져다 쓰다 보니 특히 공세에 대책 없이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소송에 적극 맞서는 경우보다 적당한 선에서 특허료를 주고 봉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어느새 국제 특허 시장의 봉이란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 한국의 기술 특허로 수자는 수출 대 수입이 3 대 7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이런 때에 ETRI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당당히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더니 어찌 더위에 지친 국민 놀음 뻥이게 하지 않겠는가. ETRI는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승소할 경우 최소 2 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된 기술인 민족 승률이 거의 100%라고 한다. ETRI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키아·모토로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TRI에 막수를 보낸다.

기사 3.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SPH America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로 해외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폭염을 식혀주는 빙고’라고 ‘당당히’ 비유한 2008년도 종준 신문기사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IP로 해외 기업을 소송하는데 대한 우리나라 생태계 구성원들의 인식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이와 같은 추정은 위의 기사 3에서와 같이 국내 자본으로 설립한 비실시기업인(또는 일명 특허괴물) SPH America가 ETRI 특허를 이용하여 해외 핸드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국내 언론계의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사실 이 정도의 애국적 반응은 SPH America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모조리 승소한 다음에 나와야 할 반응이겠지만, 수십 년간 특허소송으로 당해온 우리는 해외기업에게 승소하기는커녕 해외기업을 제소한 사실 자체로 만도 폭염을 잊을 정도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극히 단순하며 감정적인 애국주의의 발로인 동시에 IP에 대한 국수주의의 표출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애국주의와 국수주의는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가 지식기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생태계 그동안 구성원들의 이러한 인식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적절히 활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애국주의와 국수주의는 결국 수출기업에게도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앞서 인용한 기사 1이나 2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끼리도 자신의 IP를 허락없이 사용한 다른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이라도 벌릴라치면 ‘불량한 기업’으로 치부되고 따라서 자신의 IP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다른 기업에 대하여 특허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나서는 대신 제3자를 고용해야만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구성원들이 우리 발명가들의 IP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풍토에서 대학의 교수·발명가, 연구소의 연구원·발명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들이 IP 창출에 열심일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생태계 구성원들이 발명가의 IP를 우리 수출기업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정도로 간주하는 한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IP를 창출할 이유가 없어지며, 이에 따라 IP를 창출하려는 발명가들도 곧 멸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IP 창출은 급격히 억제될 것이고 IP 축적량 역시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의 발명가들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허가 없이 그들의 IP를 도용하는 것은 용인하더라도 해외 기업을 상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여 충분한 수익을 올리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명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IP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운영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2) 유명무실한 우리나라의 IP 보호 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창출된 IP를 우리나라 안에서만 활용되도록 강요하는 제도 역시 운영의 묘만 살릴 수 있다면 지식기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발명가들은 미국에서만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이나 특허침해소송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수천만 불, 수억 불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미국의 IP 시장은 역동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는 180도 반대이다. 최근 특허청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전국 아래 우리나라 법원이 특허 침해기업에 선고한 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단 6~7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 2~3년은 걸리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설령 특허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거꾸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물어내야 할 벌금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기술을 능동적으로 이전받거나 양도받아 올 이유가 전무하다. 왜냐하면 일단 특허권자의 기술을 몰래 사용하다가 운이 나빠 소송을 당하고 패소하더라도 물어내야 할 벌금은 경범죄 수준인데, 특허권자로부터 기술을 사오려면 이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의 발명가들은 남들이 뺏히 자신의 IP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남의 IP를 도용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물어야 할 벌금이 적으니 발명가들의 IP를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할 필요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정부에서 IP가 중요하므로 존중하고 보호하자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우리나라 사법 제도 및 운영이 미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IP 존중과 보호는 애당초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IP 인프라이다.

3) 수출을 억제하는 수출기업 위주의 IP 제도

또한 우리나라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동 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은 "지경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 또는 ...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 수출금지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 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산업기술을 외국에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세기 초라면 위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신기술은 간단히 혼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굳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기반시대의 IP는 이와 180도 틀리다.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각종 첨단기술은 물론 이종 분야간의 융합기술로 요약되는 작금의 지식기반시대에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견실한 IP를 창출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또한 공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 ·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중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위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우리나라 대학 · 연구소의 발명가가 창출하는 모든 IP를 구속하고 있다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규정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동 법의 편향된 운영이다. 왜냐하면 동 법은 우리나라에서 창출되는 IP를 우리 수출기업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중 상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가 결실을 맺어갈 때가 되면 공교롭게도 정보수사기관과의 교류가 시작되고는 한다. 이 IP를 원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특정 국내 기업이 이 IP를 원하게 되면 10중 8, 9 이러한 IP의 해외 수출은 물 건너갔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물론 우리 수출기업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 IP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IP를 도용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다순 치더라도 물어야 할 별금이 경범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발명가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IP를 구입할 우리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설령 있더라도 회장님께서 노하실 일이다.

4) 국내로 제한하였으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IP 시장

이 모든 슬픈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는 '制限'과 '不在'로 인한 '後進性' 이란 키워드로 요약됨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은 IP 시장을 국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국내에는 IP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생태계는 '후진성'을 떨치지 못한 채 벌써 10년 동안 지식기반시대를 표류하고 있다. 이 같이 척박한 풍토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발명가 대부분이 IP 창출의욕을 이미 잃었을 것이고, 혹 아직 잃지 않은 발명가들도 IP 창출 의욕을 곧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5.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문제 해결의 절박함

우리나라의 IP 산업은 전국 아래 위의 악순환을 반복하여 왔다. 다행히도 20세기 말까지 계속된 제조업 기반의 산업자본시대에서는 우리의 기형화된 IP 산업이 우리나라

경쟁력에 미쳤던 영향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지식기반시대에서는 IP 산업이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기형화된 IP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점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많은 나라들, 심지어 선진국들조차 지식기반시대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산업자본시대의 패러다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지식기반시대 자체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IT 기술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에서 유능한 발명가들을 육성하여 IP 창출을 최대화하도록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종류·하류를 정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바로 21세기의 IP 게임이다.

하지만 불행한 점은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이다.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온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를 탈피하고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IP 마인드를 익히고 실행하는 것이다.

제6장 선순환적 지식기반 생태계 구축을 통한 'IP立國'

1. 명제

21세기는 지식기반시대이다.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는 제품이 아니라 지식재산, 즉 IP이다. 지식기반시대 선진국은 IP를 많이 보유함은 물론 소모하는 IP를 보충할 수 있는, 즉 높은 IP 창출 능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따라서 IP 창출은 IP입국의 초석이다.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인 IP를 생산하는 지식기반 생태계의 구성원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발명가이다. 따라서 발명가가 역동적으로 IP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생태계는 전도가 유망한 생태계인 반면 발명가가 IP를 창출하지 않는 지식기반 생태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이다.

2. 'IP立國'을 위한 총체적 목표의 확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기반시대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는 IP이다. 따라서 지식기반시대의 우리나라의 목표는 'IP立國'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창출할 수 있는 IP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쉽다. 어려운 부분은 바로 그 동안 우리가 뺏속까지 사무치게 익혀온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를 탈피하고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IP 마인드를 익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총체적 목표를 확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총체적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는 IP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하려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IP(물론 양적인 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를 최대화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IP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우리나라의 IP는 지식기반 생태계의 구성원인 수출기업(거의 모든 수출기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및 강소기업도 포함)의 IP, 대학·연구소의 IP, 중소기업의 IP, 개인의 IP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IP를(그림 3 도식의 좌변에 해당)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IP(그림 3 도식의 우변에 해당) 각각이 최대화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IP를 창출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열정적으로 창출에 몰입하면 저절로 해결될 일이다.

$$\begin{aligned} \boxed{\text{대한민국}} &= \boxed{\text{수출기업}} + \boxed{\text{대학/연구소}} + \boxed{\text{중소기업}} + \boxed{\text{개인}} \\ \boxed{\text{대한민국}} &= \boxed{\text{수출기업}}_{\text{최대화}} + \boxed{\text{대학/연구소}}_{\text{최대화}} + \boxed{\text{중소기업}}_{\text{최대화}} + \boxed{\text{개인}}_{\text{최대화}} \end{aligned}$$

그림 3. 지식재산마인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총 지식재산(IP)을 나타내는 도식

물론 생태계의 특정 구성원이 우량 IP를 창출한 경우 이를 둘러싼 다른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열정적으로 IP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만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식기반시대에 우리나라가 빛속 깊이 익히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야 할 IP 마인드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 기업은 물론 일반 대중의 인식은 아직도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마인드는 무엇인가? ‘수출입국’이 그 대표적인 마인드이며, ‘제조업이 산업의 꽃’이라는 인식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마인드이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위 그림 3의 도식을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로 해석하면 그림 4의 도식을 얻게 된다.

즉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건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마인드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수출역군인 수출기업이 부흥해야만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보유한 IP가(그림 4 도식의 좌변에 해당) 최대화되어야 하며, 그 방법론은 바로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들인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IP를(그림 4 도식의 우변에 해당) 각각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즉 그림 4 도식의 우변에서 ‘음수’ 기호가 붙은 모든 항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즉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개인 등이 창출하는 IP를 원천적으로 수출기업에 귀속시키면 만사형통이며, 이는 그림 4 도식의 우변에서 ‘음수’ 기호가 붙은 구성원의 IP 자체를 ‘음수’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림 4 도식의 우변에서 ‘음수’ 기호가 붙은 모든 항이 ‘0’이 되면 아니면 이 항들 자체가 음수가 되면 결과는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IP를 산업의 꽃인 수출역군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가 수출기업이 되는 셈이다.



그림 4. 제조업마인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총 지식재산(IP)을 나타내는 도식

물론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줄지어 우리나라 전체의 IP를 ‘올인’ 당한 수출기업의 IP 보유량은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 경쟁력 역시 급격히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발명가, 연구소의 연구원·발명가, 중소기업, 개인발명가들의 ‘깨달음’이다. 자신들이 창출한, 자신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 IP가 자신들의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수출기업에 혈값에 양도되는 것을 목도한 발명가들은, 이러한 과거를 잊고 다시 또 IP 창출에 몰두할 만큼 미련한 부류가 아니다. 지식기반시대의 발명가들은 영민한 존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모를 당한 발명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는 더 이상 IP를 창출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IP를 창출하더라도 이를 대학·연구소에 신고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인 IP의 생산자인 발명가를 말살하고 IP의 소비자인 제조업만을 양성하는 비이성적 정책이다. 산업자본시대에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목적이 제품의 생산이었던 것처럼 지식기반시대에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계획은 바로 IP 창출이 목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물론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는 제조업을 기피해야 하고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도구로서의 제조업은 지식기반시대에도 당연히 필요하다. 단 지식기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IP 창출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지향하여야 한다. 즉 우리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에서 창출하고 중류에서 권리화한 우수한 IP를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국내 제조업(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재정비하고 이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의 정당한 부분이 상류의 발명가들에게 환원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IP를 역동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적 지식기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총체적 목표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IP 및 IP 창출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의 발명가들이 자신이 창출한 IP로부터 수익을 올리도록 하여 IP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일단 총체적 목표를 확립한 후에는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의 IP 창출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IP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태계 중류 및 하류를 정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각 단계 및 IP 인프라에 대한 개선 방안은 차후 논의할 예정이다.

3. 최우선 과제는 생태계 상류의 최적화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정책은 발명가가 IP를 창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복해지는 정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기반 생태계는 멸망하고 우리나라는 지식기반시대에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려모로 볼 때 정부야말로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패러다임을 버리고 지식기반시대의 IP 패러다임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시대의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할 막중한 책임을 진 당사자이다.

수출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종업원·발명가가 IP를 창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복해지도록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신의 종업원·발명가가 IP를 창출하면 기꺼이 기업에 신고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평생 남의 IP를 빌려 쓰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연구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기술이전조직인 TLO가 대학의 교수·발명가와 연구소의 연구원·발명가들을 IP를 창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복해지는지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TLO가 교수·발명가, 연구원·발명가의 수족이 되어 IP 상용화 및 IP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전향적으로 투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대학·연구소는 필연적으로 지식기반시대의 2류·3류 구성원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4. 차선 과제는 IP 인프라의 재정립

제아무리 우리가 IP 창출이 중요하니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인 IP를 생산하는 지식기반 생태계의 구성원인 발명가가 역동적으로 IP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산업자본시대 패러다임에 고착화된 우리나라의 IP 인프라를 IP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아직도 산업자본시대의 제조업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태계 구성원의 IP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가 지식기반시대의 IP 마인드로 재정립되지 않는 한, IP를 존중하는 인프라는 갖추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발명가는 IP를 창출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지식기반 생태계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앞서 설명한 총체적 목표를 인지하고 이에 알맞도록 IP 인프라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즉 지식기반시대의 우리나라 목표는 'IP立國' 이므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보유하고 창출할 수 있는 IP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 방법은 우리나라의 수출역군들이 다른 구성원들의 IP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각 구성원이 보유하고 창출할 수 있는 IP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식기반 생태계 구성원들이 IP의 중요성을 깨닫고 IP 창출이 지식기반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는 우리는 지식기반시대를 계속 표류하는 처지를 면할 수 없다.

두 번째 과제는 정부·국회가 앞장서서 우리나라 IP 활용 시장을 국내로 제한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이 중 급선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선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기술유출방

지법은 정부 지원으로 창출한 IP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활용되도록 그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이다. 하지만 국내에 공정한 IP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IP 활용 시장을 국내로 제한하는 제도는 IP 창출 그 자체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동 법이 수출기업 위주로 운영될 경우 우리나라 발명가들의 IP 창출 의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 법률은 현실적 IP 활용을 억제함으로서 생태계 하류의 IP 사업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폐지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 해외 기술이전은 정부 허가 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법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IP 시장을 재건하는 일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특허침해소송을 통하여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국내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승소하더라도 보상액보다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원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대학·연구소·개인의 특허를 도용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즉 타인의 특허를 실수로 또는 고의로 침해한다하더라도 승소해봐야 손해라는 것을 아는 특허권자는 알아서 스스로 소송을 포기할 것이고, 일부 끈질긴 특허권자에게 소송을 당하여 설령 패소하더라도 물어야 하는 벌금이 경범죄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앞장서서 침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허법을 운영해온 관행을 탈피하고 특허권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도록 특허법을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IP 시장 재건의 초석이 될 것이다.

5. 후속 과제는 생태계 중류 및 하류의 최적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류·하류 없는 지식기반 생태계는 기형적으로라도 구축이 가능하지만, 상류 없는 지식기반 생태계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식기반 생태계 상류를 정비하려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IP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시작된 후에나 가능한 것이 생태계 중류·하류의 육성이다. 그 다음 단계는 지식기반

생태계의 상류·중류·하류를 최적화하는 동시에 IP가 생태계 상류·중류·하류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동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지식기반 생태계 중류·하류를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나 법을 입안할 때 항상 주의하여야 할 점은 과연 이러한 제도나 법이 생태계 상류 및 IP 인프라에 미칠 영향이다. 즉 새로운 제도나 법이 생태계 상류의 발명가들의 IP 창출 의욕 제고에 배치된다면 이는 지식기반시대에 알맞은 제도나 법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식기반시대의 기축통화는 IP이고 지식기반 생태계는 IP를 먹으며 발전한다. 따라서 생태계 중류·하류 및 IP 인프라를 육성하더라도 수단이 목적을 범하는 우를 저지르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6. 제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한다. 내가 제안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발명가들이 환영하는 정책인가 아니면 똑똑한 발명가들로부터 백안시당하는 정책인가? 내가 제안하는 경영 방식은 우리나라 종업원·발명가들이 환영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똑똑한 종업원·발명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방식인가? 내가 운영하는 TLO는 우리나라 대학·연구소의 교수·연구원 발명가들이 인정하는 TLO인가 아니면 똑똑한 교수·연구원 발명가들로부터 무시당하는 TLO인가?

왜냐하면 지식기반시대의 발명가들은 영명하며, 영명한 발명가들은 정책, 경영 방식, 운영을 포장한 각종 미사여구에 혼혹되지 않고 현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IP를 창출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 아니면 불리한지를!

다음 호에 계속



심영택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빙교수 겸 개인발명가
Intellectual Ventures Korea 지사장
미국 특허 로펌 Fish & Richardson 및 Pennie & Edmonds 근무
미국 Duke 대학교 공학박사 및 법학박사
KAIST 회학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회학공학 학사